

부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가합8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개명전: B)

피고C

변론 종결 2021. 6. 2.

판결 선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479,026,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10.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479,026,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10.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면서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정민

판사강윤진

판사전유상

별지